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889 제출연월일: 2024. 10.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0조(강간 등 살인 ·치사)"를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검사"를 "검사(이하 "복약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 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약검사를 받을 것
제44조의6제3항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 중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한다.
제44조의8제3항 중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구인·긴급구인· 유치"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보호장구의 사용"으로,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를 "제38조부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로 한다. 제44조의9제1항 본문 중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을 "피치료명령자는"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또는 제8조의2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
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죄의 범위)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	
죄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3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	
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	<u>제8조(장애인인 아동·청</u>
<u>상)·제10조(강간 등 살인·</u>	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8조
<u>치사)</u> 의 죄	<u>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u>
	<u>·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u>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u>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	②
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켜	

- 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 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 한 검사
- 2. ~ 9.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 제44조의5(준수사항) 제44조의2제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신 설>
-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①・
 - ② (생략)
 - ③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 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 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 명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 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

1
검사(이하 "복약검사"라 한
<u>다)</u>

- 2. ~ 9.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1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선고받 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약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 </u>

④ (현행과 같음)

① ----- 피치료명령자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 ①·② (생 략)
 -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 •구인 • 긴급구인 • 유치 • 선고 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 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 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 ⑤ (생 략)
 - ⑥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경고ㆍ
	<u> 구인・긴급구인・유치・보호장</u>
	<u>구의 사용</u>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
	<u>조의5까지</u>
제	44조의9(비용부담) ① <u>피치료명</u>
	<u> 령자는</u>
	② (현행과 같음)
제	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피치료명령자</u>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에「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 추가
2	안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약검사 근거 규정 마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안 제44조의5(준수사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①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추가됨으로써 대상 범죄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2년 기준 ①, ②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된 대상자는 총 35명(여성가족부「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참조)이고, 치료감호의 경우 시설 내 처우로서 다른 보안처분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 참고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도착증 환자에게 부과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경우 2011년 제도 시행 후 현재(2024년 8월말)까지 총 91건이 집행되었으나, ①, ②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는 없음
- 개정안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복약검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보호관찰관이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이미 인력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본 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안연지	반기리	권은아	이영면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반기리	02-2110-3334	giriban@korea.kr